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10시 05분에 이사회 개최

<김○○ 경영기획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 이사장>

○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기 이사회는 내년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좋은 의견 주십시오. 내년 사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받은 사업비를 사업비 출연금으로, 재단 출연금형태로 받은 것입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 재단 출연금으로 확대해 추진하게 됩니다. 또 공간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양에 창작공간이 생기면서, 산양 창작공간, 예술공간 이야, 산지천 갤러리, 김만덕 객주 등 (4개 공간을) 재단이 직접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 같고요. 내년 초 정기 이사회 때 보고하겠습니다.

□ 개 회

<김○○ 경영기획본부장>

○ 이사장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 성원보고 하겠습니다. 이사 15명 중에 10명이 참석하셨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한○○ 감사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 이사장님이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고○○ 이사장>

○ 오늘 회의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 제5차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 먼저, 경영기획본부장이 전차 회의록 결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김○○ 경영기획본부장>

○ 19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의거 설명 -

○ 19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서면의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의거 설명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1호 「2019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고○○ 이사장>

○ 전차 이사회 보고에 이어서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1호 「2019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 경영기획본부장이 안건을 설명하겠습니다.

<김○○ 경영기획본부장>

○ 의안번호 제1호 「2019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의거 설명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1호 「2019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이사>

○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사업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김○○ 경영기획본부장>

- 지난번 이사회 보고가 끝난 건입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송○○ 이사>

- 3차 추경에 공공미술작품정비사업이 올라간 건지요?

<김○○ 경영기획본부장>

- 추가경정예산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 그리고, 공공미술작품정비사업은 2019년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 이사>

- 보고에도 나왔었는데 서면의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주브랜드공연활성화 사업은, 그 당시 서면의결 연락을 받았었는데 토론할 소지가 있으니 회의를 거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었습니다. 당초부터 이렇게 계획되어 있던 겁니까?

<김○○ 예술창작팀장>

- 브랜드공연활성화사업은 도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받고 있구요. 당초 올해 초 시나리오 공모를 해서 심사 통보까지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시나리오를 받고 작업하는 기간 때문에 올해 끝낼 수 없어서 사업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잡았습니다. 지금 공모안은 띄워져 있는 거구요. 시나리오 공모에 대한 시상선정 내년 작품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 이사>

- 시상금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김○○ 예술창작팀장>

- 네, 시나리오 작가에게 지급될 지원금, 아티스트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 이사>

- 도에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도문화예술위원회 안건을 올리지 않고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도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사업이)넘어오면 해야 하는 거냐는 거죠. 토론할 필요가 있어서 그 당시에 도 제가 정식 이사회를 거쳐 달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기간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 이사장>

-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문화예술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수탁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사후에 승인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내년엔) 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 이사>

- 공공미술작품정비사업 관련, 기존 예산을 짤 때 미처 생각지 못한 게 있는 건지요?
- 공공미술이 어떤 작품이고 어떻게 정비되는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고○○ 문화예술사업본부장>

- 이사님들이 양해해준다면, 담당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홍○○ 이사>

- 지난번 이사회때 터미널 철거비용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 이사>

- 아, 그 철거입니까?
- 그게 1억~3억 들어서 만든 걸로 아는데, 처음에 만들 때도 공공미술 관련해서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추진한 게) 그게 문제죠. 일단 해놓고, 자연은 그냥 가지만, 인위적인 건 나중에 어떻게

든 손을 보지 않으면 백년이든 천년이든 갈 수 있는 거면 문제가 없는 데, 그걸 철거하는 경우에 1억을 잡은 겁니까?

<송○○ 지역문화팀장>

○ 작년에 1억 예산으로 시외버스 터미널의 공공미술작품을 철거하는 사업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철거비용에 대해 얼마가 나올지 설계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설계작업을 진행하여 2억 1천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공기관대행 수수료를 제외하면 8천만원 정도여서, 사업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정책과에 의뢰했습니다. 근데, 문화정책과에서 마지막으로 추경으로 예산 1억이 확보되었으니, 그걸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작품 철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부○○ 이사>

○ 그러면 철거해서 옮기는 겁니까, 해체해서 없애버리는 겁니까? 작품이 많이 손상됐을 때 원상복귀해 주는 겁니까? 공공미술은 관리가 안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인지 철거인지, 철거라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 지역문화팀장>

○ 터미널 주식회사와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원하는 사업범위까지 산정해서 철거랑 창호랑 새시를 교체하는 것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문화정책과의 자문을 들었구요. 문화정책과랑 관리하는 부문은 지속협의를중입니다.

<부○○ 이사>

○ 그러면 철거해서 결국 원상복귀를 해주는 거네요? 그게 작품으로서 과연 낭비인지, 도심에 활력을 주는 예술작품인지, 앞으로는 고민하면서 해야겠습니다.

<송○○ 지역문화팀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강민숙 의원과 같이 공공미술작품정

비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조례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차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공공미술의 일몰, 설치, 해체, 철거, 리모델링은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 이사>

○ 만약에 용접해주러 갔다가 (작품을) 빼내서, 고철로 팔고 깔끔하게 페인트칠해서 보수으로 비용을 따졌을 때 과연 2억이나 들어가는 건지? 작품을 버린다니까요.

<송○○ 지역문화팀장>

○ 설계내역 단가는 전문 설계사와 논의를 했습니다. 이건 해체작업입니다.

<부○○ 이사>

○ 해체인데, 해체하고 외벽을 갖추는 건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이 들고, 운송비도 들지요.

<양○○ 이사>

○ 부○○ 이사님이 지적하는 것과 공공미술작품 정비사업을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가 있나,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 이사장>

○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양○○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공공미술작품을 철거하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데 대해 언론 등 외부 시선에 확실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송○○ 이사>

○ 철거 작업만 하는 건지요?

<고○○ 이사장>

○ 공공미술사업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송○○ 이사>

- 지난 번 이사회에서 부결해야 하는 것인데, 결정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재단은 막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닌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양○○ 이사>

- 이 지적에 대비한 대책이 있습니까?

<송○○ 이사>

- 찬성할 사유가 없는데, 앞으로 재단에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하라고 해서 ‘네’ 라고 할 게 아니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결정전에 이사회에 권한이 있는 거지요.

<고○○ 이사장>

- 그 부분은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이사>

- 공기관대행을 무조건 받을 것이냐,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재단도 그렇고, 이사님들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 이사장>

- 그럼 이 부분은 회의록에 남겨두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송○○ 이사>

- 네.

<부○○ 이사>

- 원안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하고, 견적을 냈는 데 이렇게 필요하다고 온 거니까.. 원안 통과했으면 합니다.

<고○○ 이사장>

- 이사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송○○ 이사>

- 재청합니다.

<고○○ 이사장>

- 송○○ 이사님이 재청하셨습니다.
- 의안번호 제1호 「2019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부○○이사님께서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안번호 제2호 「2020년 사업계획(안)」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2호 「2020년 사업계획(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 경영기획본부장이 안건을 설명하겠습니다.

<김○○ 경영기획본부장>

- 의안번호 제2호 「2020년 사업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의거 설명 -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2호 「2020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이사>

-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속사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계속사업만 할 것 인지, 신규사업도 있어야 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 발굴은 없는 겁니까?

<고○○ 이사장>

- 올해는 신규사업보다 조직정비가 우선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현 조직 체계에서 공간을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기존에 사업들을 출연금으로 묶어서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홍○○ 이사>

- 덧붙여 말씀 드립니다. 2019년 제주원로예술인사업을 했잖아요. 고영만 선생님 도록을 보니 500부밖에 발간이 안됐어요. 그리고 작업결과물이 디지털이나 온라인 상으로 자료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이와 더불어 원로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예술인들의 아카이브 작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단이 문화예술지원센터라고 한다면, 제주 역사에 있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 개인뿐이 아니라 단체들도 아카이브 할 것이 많습니다. 사진이든, 그림이든 여러 가지 장르가 있구요,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이사>

- 원로예술인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고○○ 이사>

- 공모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강○○ 이사>

- 2년전 처음 사업이 추진됐을 때, 사업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모 방식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지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공모로 하지 말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3~5배수 추천을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필요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필요한 사람이 선정되고 그 가치가 확산 되는 건데, 공모 개념으로 하다보면 본인이 모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김○○ 예술창작팀장>

- 2018년에는 (제주예술인아카이브사업은) 추천을 통해서 재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했고, 제주원로예술가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작가를 선정한 후 재단 직접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 공모로 진행하게 되면 이사님이 지적해주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원로예술가지원사업은 저희가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예술단체)협회장님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일을 대행해 주는 인건비까지 인정해서 (회고도록을) 제작을 했습니다. (작업결과물은) 현재까지는 오프라인으로만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 2019년 제주예술인아카이브사업은 2018년 추진된 원로예술가와 작고작가 다섯 명의 작업결과를 DB화하는 작업을 진행했구요. 2019년 원로예술가지원사업으로 2명이 선정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54쪽, 올해 사업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술인아카이브사업을 원로예술인 DB구축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서, 오프라인으로 발간된 자료들을 DB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 이사장>

- 홍○○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술가 활동을 아카이빙하는 사업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재단이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기관이 다 중요성을 인식하나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천만원 예산으로, 책자로 된 원로예술인 결과를 중심으로 아카이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홍○○ 이사>

- 작년에 예술인아카이브 사업이라고 해서 9천만원이 책정된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김○○ 예술창작팀장>

-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업예산은 2018년 오프라인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오픈하는 예산입니다.
- 올해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2019년에 진행된 원로예술가 두 분의 조사자료를 온라인으로 작업하는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홍○○ 이사>

- 저는 원로예술인도 좋지만, 일반적인 예술인들을, 개인이든 단체든 주목할만한 활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아카이브가 전혀 안되어 있는 실정이라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강○○ 이사>

-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980년대 제주 전시 도록을 참고하려면 어디서 찾습니까? 이걸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재단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재단이 만들어 진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 작가 개인들도 시간이 없다보니, 개인도록을 안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에서 이런 아카이브 작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예산편성하지 않고, 지속사업으로 가야하는 데 아직까지도 멈추고 있다는 얘기죠.

<홍○○ 이사>

- 국가 예술기록원이 있습니다. 아카이브 기관입니다. 국가 전체에서, 예술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고, 가공할 수 있게끔 데이터 마이닝하는 기관입니다.
제주에서도 사실 여러 채널에서 아카이브 요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재단에서 하려고 하면 인력, 시스템, 예산, 공간 등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 제주예술인 중 한 두분을 선정해서 아카이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술인아카이브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재단이 조금 더 예산, 공간, 인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론 등에 어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 이사>

- 작년에 2018년 사업 중에 원로예술인에게 1인 5천만원씩 지원했던 사업이 있어요. 그 당시에 4명인가 몇 명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2억5천이었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개인으로 하다보면, 예술인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연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어서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 문화예술사업본부장>

- 양○○ 이사님, 홍○○ 이사님의 말씀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출연금으로 사업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없지만 일몰사업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최소한 일몰 사업을 결정했거든요. 저는 올해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했다는 건 문화행정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DB부분은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DB구축 아카이브사업을 해보니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구요. 우선 순위를 뒀던 게 원로, 작고하신 분부터 시작하자는 로드맵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나, 조직을 만드는 부문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 이사>

- 58페이지 예술인복지사업 내용에 예술경영 교육프로그램 중 성평등 교육이 있는데, 어떤 취지로 추진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예술창작팀장>

- 예술인복지사업의 사업추진 목적은 예술인 권익 보호와 자생력 강화입니다. 자생력 강화는 사실 예술 경영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구요. 성평등 교육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 예비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비예술인 복지사업으로 제주대학교 음악학과와 미술학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인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술인지원사업의 프로젝트형

사업의 경우 네트워킹을 자주 하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이사>

- 75페이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한 후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으로서 활동기반이 이어지고 있는지요?

<이○○ 생활청년문화팀장>

-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사업은 국가직접사업이구요,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출연금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문인력 양성사업만으로는 말씀하셨던 문화적 매개나 일거리, 일자리, 다양한 매개사업을 하는 교육을 할 수 없었습니다.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취지가 문화적 매개가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이나 실무적으로 현장을 같이 매개하는 걸 많이 하고 있구요. 현재 올해 처음 공모,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개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은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문화 매개부문에 역량을 강화하여 파트너나 협력파트너, 여러 가지 문화매개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협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김○○ 이사>

- 알겠습니다.

<부○○ 이사>

- 지금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사 발급기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발급 혜택이라던가, 프로그램이라던가, 어찌보면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국비로 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국비 이외에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차이점이라던지,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일반도민과 어울

릴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자격증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을 보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도 있는데,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 묶고, 가지를 벌릴 수 있으면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서가 다르면 같은 프로그램을 말만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 이사장>

- 말씀하신 대로 팀과 팀 간에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 정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본부에서 고민해서 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고, 중복된 건 없는지. 사실 얘기하신 건 결들이 조금 다릅니다. 교육사인턴십은 박물관, 미술관에 교육사를 (배치해 일자리 창출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문화기획학교는 문화 활동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므로, 결이 조금 다릅니다. (부○○ 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팀간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 이사>

- 데이터 구축과 마찬가지로 일반예술인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을 거예요. 미술관, 박물관, 장애인, 청년, 교육사업, 문화공간의 근무자,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고○○ 이사장>

- 그런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문화기획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예술단체, 예총, 민예총, 더 큰 내일센터나 청년센터 혹은 청년협동조합등과 협력해서 출로를 뚫으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화과정으로 문화기획학교 수료생이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실력있는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부○○ 이사>

- 다만, 문화기획학교 수료생만 활동하지 말고,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하여 시너지가 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강○○ 이사>

-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입니다. 재단인 경우에 세계유산본부와 해녀문화유산과의 공기관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재와 해녀 관련하여 재단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관련자가 있습니까?

<고○○ 이사장>

- 공인된 전문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공부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 이사>

- 예를 들어, 만약에 해녀(사업 담당자)라면 해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만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두 개 기관에 대한 공기관대행사업을 계속 받을 거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확충하거나 그 사업을 내보낸다거나 그런 방안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 이사장>

- 공기관 대행사업이 좋은가, 나쁜가, 공기관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안 좋은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문화예술재단이 맡는다면 문화예술재단의 특성을 가미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 지금 해녀사업과 돌봄사업을 재단이 맡는 게 맞느냐 안맞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재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돌봄사업이 단지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맡았다면 이것을 확산시키고 알릴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하는 거고, 해녀문화사업인 경우

해녀 커뮤니티를 만들게 하고, 사업을 확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같은 지적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고민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부 의논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 이사>

○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에서 (사업을) 맡아서 해녀 담당부서나 문화재 담당부서가 갖고 있는 경직성이 해소되고,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다고 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유산본부의 문화재 돌봄사업은 내년에는 없는 건가요?

<고○○ 이사장>

○ 예. 공모에서 떨어졌습니다.

<양○○ 이사>

○ 다른 기관에서 하나요?

<고○○ 이사장>

○ 네, 민간단체에서 추진합니다.

<양○○ 이사>

○ 떨어진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고○○ 이사장>

○ 약간의 내부적인 진통이 있었습니다.

<양○○ 이사>

○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이 약 15억 정도가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로

예술인아카이브사업은 7천만원이 감액된거죠? 2천만원 가지고는 내년 사업을 못한다는 것 같은데요.

<김○○ 예술창작팀장>

- 그런 건 아닙니다.
- (올해)원로예술가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고영만선생님과 (윤석산 선생님) 두 분의 데이터는 확보를 했고요. 전산화하는 작업의 비용입니다.

<양○○ 이사>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DB를 파악하든, 시스템을 구축하든, 데이터를 축적하든, 어떤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데 그 비용이 2천만원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김○○ 예술창작팀장>

- 그건, 내년 원로예술가 아카이빙 구축사업은 1억 정도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 이사>

- 그건(원로예술가지원사업은) 어디 있습니까?

<김○○ 예술창작팀장>

-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고○○ 문화예술사업본부장>

- (원로예술인DB구축)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년도 선정된 원로예술가의 디지털화 안 된 자료를 다음연도에 DB로 구축된 전산에 옮기는 작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계를 거쳐 추진되기 때문에,(올해는 2018년도 오프라인 자료를 DB로 옮기는 작업을 추진했고), 내년 2천만원은 DB유지 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안한다는 건 아닙니다.

<양○○ 이사>

- 네, 알겠습니다.
- 질문을 더 드리자면, 재단 문화예술공간 통합운영공간 사업, 이게 (예산

이) 늘어났죠?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7억 정도 늘었는데요.

<고○○ 문화예술사업본부장>

○ 산양창작센터가 조성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8억.

<양○○ 이사>

○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서 산지천 갤러리를 이용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단체에 더 개방하고 수익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나요?

<고○○ 이사장>

○ 산지천갤러리 말씀이십니까?

<양○○ 이사>

○ 산지천갤러리도 그렇고, 다른 문화공간들, 창작공간들 포함해서요.

<김○○ 예술창작팀장>

○ 지금 현재 공간의 수입은 (도에) 반환됩니다. 위탁이어서 수입을 재단에서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 이사>

○ 그런 사업구조여서 좋은 공간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민간기업이 한다고 하면, 꽤나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우리가 역으로 문제가 있거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고○○ 문화예술사업본부장>

○ 이사님, 그것도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까지는 1년 예산이 (산지천갤러리)7천만원 정도받았는데 2억 7천까지 증액시켰습니다. 공간의 정체성을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건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고○○ 이사장>

- 저도 부임하자마자 예술공간 이아의 공간운영에 대해 도의원들의 지적을 받아오면서 이어나 산지천갤러리 공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지 내부에서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산지천이나 이아의 운영 변화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내일, 토요일에 있을 이아 생활문화 행사, 산지천갤러리 미디어 나이트전은 원도심에 가까이 있으면서 도민과 밀접하게 갈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겁니다. 공간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아는 1, 2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환경을 고려해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이사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을) 민간이 맡았으면 더 활용했을 텐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고민을 계속 하면서 나온 게 통합운영이었습니다. 내년에 (공간 통합운영이)시작되는데, 아이디어를 얻거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들겠습니다.

<김○○ 예술창작팀장>

- 산지천 갤러리 1층 수익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민간위탁을 줘도 수익사업은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갤러리가 공유재산이어서 회계법상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카페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 이사>

- 저는 집이 동네여서 (공간에 대해)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공간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 그 공간을 상설적으로 활용할 사람들이 가야 하는 데 그 접근성이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극단이 연극을 하는데 재밌습 1층을 대여해서 자기들이 1만원씩 받아서 공연을 하는데 대여비를 내는데도 못미친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연습할 수 있는 상설공간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문화예술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아는 갤러리 개념이 많잖아요. 연습한 걸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해변공연장에도 공연장이 있잖아요. 공연장이 많은 것 같은데 비슷한 시기에 (공연이) 몰리기 때문에 모자라서, 상설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 문화사업도 보니까, 연습실이라고 있는데 어떤 제공을 하고 있는지, 65페이지에 예술공간 이아에서 전시·레지던시·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거점 지원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뭘하고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고○○ 문화예술사업본부장>

- 재밌섬도 사실, 공연연습실을 커버하기 위해 구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아는) 현재있는 시설을 가지고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활청년문화팀장>

-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청년 공간지원은 (청년들에게) 창작공간의 임대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임차계약을 하게 되거나 임차 계약을 예정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 이사>

- 어느 정도 임대료를 지원하나요?

<이○○ 생활청년문화팀장>

- 최대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안으로는 기반시설이 잘된 창작공간보다는 자기가 활동하는 공간이나 연습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지원액이면 충분히 창작공간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하○○ 이사>

- 500만원으로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지금 회의 자료에는 그 내용이 나와있지 않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거죠.
- 예를 들면, 문화예술 교육사 인턴십을 해서 일자리를 주는데, 인턴십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떤 곳인가요?

<이○○ 생활청년문화팀장>

- 국립제주박물관하고, 서귀포 문화원, 제주 갯전시관 3곳 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기반)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이라 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는 기본적으로 법령상 문화기반시설에 의무화하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에서 고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 되어 있어요. 사업이 확대 되려면, 국공립 시설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이 공유돼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움직여야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 이사>

- 그와 관련해서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주에 자유학기제나 방과후에도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적극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 또 고등학교도 애월이 미술, 함덕이 음악 거점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점학교와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제주에서 예술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다 육지로 간다, 그래서 고교체계 개편을 하면서 중점학교를 하자고 해서, 육을 많이 먹었는데, 제가 애월고등학교를 가보니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지금은 육지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 대학도 변화가 생겼죠. 지금 국제대학교에 문화예술학과도 있고 제주대학교에도 석사과정이 생겼고, 관광대에도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에 있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들과 함께 지원하고 이들을 육성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제주 문화예술을 볼 때,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을 너무 학교 밖에서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 문화예술사업본부장>

- 도 교육청에서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제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엇그제 회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부각시켰고요. 저희도 계속 네트워킹하면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 이사>

- 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 이사님과 양○○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양○○ 이사님은 신규사업 관련을, 강○○ 이사님은 어떤 정책이나 공공미술 관련해서 제주도 문화예술위원회를 거쳤느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까지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개인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고요. 지원받는 입장에서 보면 올해 기류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거든요.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고, 회의나 워크숍이 많이 개최되어 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정책 회의라던지 예술인과의 자리가 많이 마련되고, 제주문화예술위원회도 특정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개발도 많이 하거든요.
- 근데, 재단은 제주의 대표 문화기관으로 더 존재감 있게 정책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적습니다. 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정책분야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도적으로 문화예술재단이 앞서나가길 바랍니다.

<고○○ 이사장>

- 이사님들의 말씀은 사업추진시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예산이 충분하다면 자체 고유사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받은 것은 재단이 나름껏 재량대로 할 수 있게 돼 그 자체도 올해는 큰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자란 부분들을 체크하고 신규사업이 필요하다면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 계속 안전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 이사>

-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발간 사업 중 ‘삶과 문화’는 재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저널인데, 이게 어떻게 편집이 되고 재단 운영이 하고 있습니까?

<김○○ 기획조정팀장>

○ 연간 편집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구요, 발간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양○○ 이사>

○ 최근에는 못 받아 보고 있는데, 위탁제작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김○○ 기획조정팀장>

○ 위탁 발언은 정정하겠습니다. 발간은 입찰을 통해 제작하고 편집기획이나, 원고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 이사>

○ 삶과문화라는 발간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써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고○○ 이사장>

○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걸 모아서 간행본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신경써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사님들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부○○ 이사>

○ 이사님들이 얘기한 것을 잘 반영해 주시고, 원안 통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고○○ 이사장>

○ 부○○ 이사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홍○○ 이사 등 다수 이사>

○ 재청합니다.

<고○○ 이사장>

- 홍○○ 이사님 등 다수 이사님께서 재청해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20년 사업계획(안)」은 부○○ 이사님께서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안번호 제3호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의안번호 제3호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경영기획본부장이 안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경영기획본부장>

- 의안번호 제3호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 회의자료 의거 설명 -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3호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 본 안전에 대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이사>

- 도의회에서 확정된 겁니까?

<고○○ 이사장>

- 예, 그렇습니다.

<부○○ 이사>

- 그럼 사업을 하면서 고칠 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 경영기획본부장>

- 그건 추경 때 합니다.

<부○○ 이사>

- 추경 말고, 사업의 수정이 필요한 게 있는지요? 안건 의결 전 미리 예상해주면,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할 거 아닙니까.
- 원안가결 제안하겠습니다. 수정할 때만 이사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이사장>

- 부○○ 이사님께서 예산 수정이나 이사회가 필요한 경우 사전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김○○ 이사>

- 재청합니다.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3호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 이사님께서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4호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4호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 경영기획본부장이 본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경영기획본부장>

- 의안번호 제4호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설명드립니다.
- 회의자료 의거 설명 -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4호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이사>

- 오탈자가 있습니다.
- 101쪽에 별표 3의 박스 내용이 왼쪽하고 다르죠? 첫 번째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 채용시 기회 부여” 입니다.

<고○○ 이사장>

- 별표 박스에 채용시 앞에 “계” 가 탈락됐습니다.

<양○○ 이사>

- 채용비리 결정은 누가합니까?

<고○○ 이사장>

- 재단 내부에서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채용비리를 지적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비리는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체 발견해서 하거나 감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피해자가 제기하기도 합니다.

<부○○ 이사>

- 이 규정은 절차상에 오류가 발견되면, 구제를 해주자는 거 아닙니까. 절차를 따랐을때는 문제가 없지만,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담당자, 처리부서에서 1차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에 관한 것인데, 관리자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고○○ 이사장>

- 있습니다. 이 규정은 채용관련 피해자가 생겼을 때 조치를 추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 이사>

- 오탈자 수정하고 원안가결 하시죠.

<고○○ 이사장>

○ 강○○ 이사님께서서 오탈자 수정후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김○○ 이사>

○ 재청합니다.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4호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강○○ 이사님
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안번호 제5호 「취업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5호 「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 경영기획본부장이 본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경영기획본부장>

○ 의안번호 제5호 「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입니다.
- 회의자료 의거 설명 -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이사>

○ 제24조 8호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 피해자에게 특별휴가
를 부여한다는 걸 넣는다는 겁니까?

<하○○ 이사>

○ 별도 지침은 어디에 있나요?

<김○○ 경영기획본부장>

- 별도 지침은 재단 내규로 만듭니다.
- 109페이지 별표 1 휴가 일수에 있는 부분이 위에 조항하고 중복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제24조3의 청원휴가를 삭제하는 데 1항은 특별휴가에 있는 내용이고요, 2항은 별표1에 들어간 내용이라 중복입니다.

<고○○ 이사장>

- 취업규정 개정은 법 개정사항에 따른 것이며, 규정이 중복되는 걸 수정하는 차원입니다.

<양○○ 이사>

- 원안가결 제안합니다.

<고○○ 이사장>

- 양○○ 이사님께서 원안가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김○○ 이사 등 다수 이사>

- 재청합니다.

<고○○ 이사장>

- 김○○ 이사님 등 다수의 이사님들이 재청하셨습니다.
- 의안번호 제5호 「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양○○ 이사님께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6호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6호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 경영기획본부장이 본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경영기획본부장>

○ 의안번호 제6호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입니다.

- 회의자료 의거 설명 -

<양○○ 이사>

○ 시스템 변경에 따른 운영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고○○ 이사장>

○ 양○○ 이사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홍○○ 이사 등 다수 이사>

○ 재청합니다.

<고○○ 이사장>

○ 홍○○ 이사님 등 다수의 이사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 의안번호 제6호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양○○ 이사님께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안번호 「제7호 지원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7호 「지원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경영기획본부장이 본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경영기획본부장>

○ 의안번호 제7호 「지원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입니다.

- 회의자료 의거 설명 -

<고○○ 이사장>

○ 지원금 예산편성 원칙을 규정해서, 법인 단체에 대한 대표자 창작활동

비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이 새로 들어가는데 맨 밑에 보면 법인 단체 대표자도 창작 활동을 하고, 직원에 포함되어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주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사례비 없는 상태여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안하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 이사>

- 일반단체, 많은 단체들이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잖아요. 고유번호증에 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법인은 아니거든요. 법인이라고 하면 사단법인, 공익법인 등이 있는데 명확히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지원받는 쪽에서 많은 문의가 올 겁니다. 혹시 열어주실 건가요?

<김○○ 예술창작팀장>

- 저희가 열고 싶다고 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득세법상으로 되어 있는 거라 사단법인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감사>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봅니다. 세법상. 법인으로 봐요. 그래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거고요. 사실상 단체에 실체가 있으면,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고유번호를 주거든요. 그래서 별도 단체로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법에 의한 개인사업자인 본인의 경우, 사업 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내서 자기가 벌었는데 자기한테 또 비용으로 하는 게 안된다는 얘깁니다. 일단은 좀 전 말한 것처럼, 법인의 범위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법인으로 봅니다.

<홍○○ 이사>

- 워크숍에서 세금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법인만 된다고 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감사>

- 법인이 여기서 우리가 결정한 사단법인이라던지 실제로 법인으로 등록된 것만 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상에는 법인입니다. 세무사에 신청을 하면, 법인으로 보고 세법관리로 볼 때,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개인 소득세법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거죠.

<홍○○ 이사>

-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김○○ 예술창작팀장>

- 사업마다 다르니까,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으면서 법원에 등기를 받는 사단법인으로 들어온 건 가능할거 같고요. 회계사님 얘기하시니까 저도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단체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개인으로 자영업자 처럼 되어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단체가 알아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원사업) 설명회 전에 확정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이사>

- 단체대표자의 급여성 인건비라고 나오는 데, 밑에는 법인 단체가 표기돼 있는데 법인만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통일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김○○ 예술창작팀장>

- 지금 일반 단체는 범상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앞에 있는 건 인건비성은 안되는 거고요. 단체가 출품을 하거나 출연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범위를 개인 단체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법인이라는 용어를 담은 것입니다. 저희 규정이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될 때, 단체가 세법으로 봤을 때 원천징수가 안되거든요.

<강○○ 이사>

- 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도 지원이 됩니까?

<김○○ 예술창작팀장>

○ 아니요. 고유번호증은 있어야 합니다.

<강○○ 이사>

○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하면, 그 법인을 빼고 얘기하자고요.

<한○○ 감사>

○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단체의 개념을 세무사에 신고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한다고 정해주면 되지 않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있다 시피, 세무서 고유번호 위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본다는 것은 등기는 안되어 있지만, 실제로 세무서랑 모든 처리할 때는 법인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신고를 하게 되죠.

<김○○ 예술창작팀장>

○ 고유번호증 발급된 걸 볼 때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 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감사>

○ 고유번호를 하실 때 다 마찬가지로 등기되는 것은, 고유번호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영리활동을 못한다는 것으로, 나중에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하려면, 별도 일반 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유번호는 법인으로 그 단체를 보겠다는 겁니다.

<고○○ 이사장>

○ 한○○ 감사님 말씀대로라면 제7조2항을 바꿔야 하는 거죠.

<김○○ 이사>

○ ‘법인단체’, 이 표시가 의미가 없는 게, 단체를 운영하고 활동하다 보면 필요와 경우에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만들어야 하고 등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법인이라도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인 경우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단체의 대표자도 창작활동에 따른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단체와 법인 단체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 이사장>

○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세하게 해야 한다면, 하는데, 만약 이 법인 단체 문구에 문제가 없다면 의결해주시고,

<김○○ 이사>

○ 단체 대표자의 창작 활동에 따른 사례비 지급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단체지만 법인 단체는 세금을 내는 단체는 된다는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하는 게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감사>

○ 법인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세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 이사>

○ 지원금을 받았을 때 세금을 조금씩 매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강○○ 이사>

○ 단체인 경우는 고유번호증을 받은 단체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감사>

○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보조금은 별도로.

<김○○ 이사>

○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해요. 그 세금이란 뭐냐면, 단체에 전체적인 게 아니라 어떤 행사를 치를 때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일반 행사할 때는 세금 신고를 안하거든요? 법인 고유증을 받으면 반드시 행사

치를 때 세금신고를 하도록 연락도 오고, 원천징수도 내야 하더라구요.

<홍○○ 이사>

○ 이 상황만큼이나 오픈이 되면 일반예술단체는 더 할 거거든요. 내부에서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발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이사>

○ 예를 들겠습니다. 천만원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치루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런저런 형편으로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서 그렇게 운영하다보니, 천만원을 받아도 행사 끝나면 세금도 내야하고, 시스템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강○○ 이사>

○ 그건 당연한 거죠.

<김○○ 이사>

○ 그건 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 이사>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법인단체라고 했을 때 고유번호증을 받은 단체로 간주한다면, 그냥 가도 문제가 없는 거고. 오역의 소지가 있다면 해줘야 하고.

<김○○ 이사>

○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법인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강○○ 이사>

○ 아닙니다. 법인인 경우는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인입니다.

<이○○ 생활청년문화팀장>

○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할 때는 법인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받았고 고유

번호증은 민간, 비영리 단체로 판단하지, 법인단체라는 개념을 고유번호증을 또한, 예술단체로 포함해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홍○○ 이사>

- 생각해보니, 지원할 때 보면 법인단체냐, 임의단체냐로 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고○○ 이사장>

- 그중에 법인 단체인 경우만 하면 되는 거죠?

<김○○ 예술창작팀장>

- 저희가 오픈은 다해줄 수 있는데, 소득세법상 임의단체들은 대표의 개인경비 처리가 불가능하고요.

<강○○ 이사>

- 고유번호증을 받은 단체에 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감사>

- 오해가 있는 거 같은 데, 소득세법에 의한 건 일반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을 하면 세법에서는 법인입니다. 근데, 법인단체 대표자 하나까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건지 논란 소지가 있냐면-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하고 등기가 안 된 단체하고-, 등기가 아닌 단체는 이게 아닌 거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인 범위를 정하면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 문화예술사업본부장>

- 회계사님께 질문을,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의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감사>

-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유번호증을 보면, ‘법인으로 보는’ 으로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세무서에 등록할 때 법인으로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법인으로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ですよ. 그런게 없는 단체들은 그냥 개인 사업자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해서 수익신고를 하고 그런 겁니다.

<고○○ 문화예술사업본부장>

○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의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김○○ 이사>

○ 고유번호증을 갖는 거 하고, 법인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하고, 그걸 거쳐서 법인 단체가 되는 거고...

<고○○ 문화예술사업본부장>

○ 지금 이슈는 대표자에게 사례비를 줘서 원천징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 단순히 고유번호증을 따더라도 소득세법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 오픈시켰을 거고.

<김○○ 이사>

○ 지금까지는 단체한테 사례비가 가능했나요?

<고○○ 문화예술사업본부장>

○ 아니죠. 오픈해 주려고 하니까.

<강○○ 이사>

○ 단체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문제제기가 많았던, 요청이 많았던 것 민원 사항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법인단체라고 해서 모두 다 그렇게 여긴다면 문제가 없지만, 뭔가 문제를 느낄 수 있다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로 봐야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홍○○ 이사>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당연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문체부라든지, 헌법 등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침을 확실하게 받아서 해야겠습니다.

<김○○ 예술창작팀장>

-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법인단체에 한해서라고 문서가 내려왔고요. 저희 지원사업이 2020년부터 균특회계가 이관되면서 국비를 받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판단해서 지정해야 합니다.

<홍○○ 이사>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헌법소원도 낼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안된다고 반박했을 때 논리가 없는 게 아닌가요?

<강○○ 이사>

-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 이 차이죠,

<홍○○ 이사>

- 그래서 저는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진행을 해야지,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강○○ 이사>

- 기본적으로 고유번호증을 받은 단체들만 지원하는데, 이 중에는 임의단체가 있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사단법인이 해당하는 것이고, 임의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한○○ 감사>

- 고유번호 있으면 원천징수 하는 겁니다. 고유번호를 가진 자가 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그걸로 원천징수를 하는 거죠

<김○○ 예술창작팀장>

- 이러면 어떨까요? 법인단체를 빼고, 대표자의 창작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만 규정 상에 남기고, 공고를 할 때는 대표자 당사자가 개인 경비 처리가 가능한 법인에 한한다고 달아주면 어떨까요?

<강○○ 이사>

- 더 복잡해져요. 어쨌든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를 법인으로 정리하면 되는 데 단서조항을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예술창작팀장>

- 고유번호증을 달아도 저희는 개인사업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경비 처리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안되는 걸로 기관이 보기 때문에...

<강○○ 이사>

- 개인사업자가 단체가 됩니까.

<김○○ 예술창작팀장>

- 단체라고 했지만, 고유번호증을 내는 건 법인이 아니면 자영업처럼 개인 단체로 보는 거죠.

<홍○○ 이사>

- 모양은 단체나 개인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고○○ 이사장>

- 여기 규정은 법인 단체만 있는 거잖아요. 법인만.

<김○○ 예술창작팀장>

- 고유번호증이 법인으로 되지 않고... 임의로 비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임의 단체라고 달고 있습니다.

<강○○ 이사>

- 임의단체도 개인은 아니잖습니까

<김○○ 예술창작팀장>

- 개인이건 아니건 간에, 소득세법상 개인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김○○ 이사>

- 법인 단체 대표자, 이 사람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한○○ 감사>

- 개인은 고유번호증을 받지 못하고요. 그냥 단체.

<강○○ 이사>

-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해당되는 거죠.

<고○○ 문화예술사업본부장>

-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원안대로 통과하고 법인이란 개념을 더 정리해서 공고나갈 때 법인을 풀어주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하○○ 이사>

- 그동안은 임의단체는 안하겠다는 거죠?

<김○○ 예술창작팀장>

- 그 대표가 신고만 되면 한다는 겁니다. 당사자의 경비는 원천징수합니다. 그 밑에 있는 회원들이나 출연자는 원천징수가 가능한데, 내 원천징수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김○○ 이사>

- 이 사항은 원안가결하고 세부사항을 정하죠.

<고○○ 이사장>

- 김○○ 이사님 원안가결 의견을 받으시겠습니까?

<한○○ 감사>

- 그러니까 이런 사례죠? 단체에 10만원을 지원했는데 단체 구성원들에

게 여러 가지 사례비가 가깝아요 기타소득으로. 근데 그 중에 같이 활동하고 말만 대표자지 같이 활동하는데 하는 데 대표자만 빼고 드린 거잖아요.

<고○○ 이사장>

○ 취지는 그건 데 증빙될 수 있는 부분만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한○○ 감사>

○ 공모사업을 관리할 때는 고유번호가 세무서에 등록된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 이사장>

○ 부서에서 확실히 하고, 김○○ 이사님 의견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청있습니까?

<홍○○ 이사>

○ 네.

<고○○ 이사장>

○ 홍○○ 이사님이 재청하셨습니다.

○ 의안번호 제7호 「지원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김○○ 이사님께서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8호 「2020년 제주문화예술재단 기본재산운용계획(안)」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8호 「2020년 제주문화예술재단 기본재산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 경영기획본부장이 안건을 설명하겠습니다.

<김○○ 경영기획본부장>

○ 의안번호 제8호 「2020년 제주문화예술재단 기본재산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의거 설명 -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8호 「2020년 제주문화예술재단 기본재산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은 170억이고, 이 중 113억이 특별회계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57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기본재산 57억을 어떻게 운영할 지를 기본재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2020년도 운영계획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 재단이 기금 300억을 조성해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취지로 가지고 있던 기본재산인데, 기본재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 전체적으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 이사>

○ 기금 300억 중에 조성액은 얼마인가요?

<김○○ 경영기획본부장>

○ 170억입니다.

<홍○○ 이사>

○ 재밌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고○○ 이사장>

○ 별첨자료 7페이지, 8페이지를 보면,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로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성사업의 타당성, 매매계약의 불확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회의가 진행됐구요. 이후 몇

번의 회의와 집담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하여 효율적 해결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위원회 검토의견이 이사장에게 넘어오면 사업 추진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양○○ 이사>

○ 지금은 어떤 결 의결한다는 건지요?

<고○○ 이사장>

○ 전체적으로 기본재산 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말합니다.

<양○○ 이사>

○ 재밋섬 검토는 검토위원회에 맡기고, 의결을 한다는 건지요?

<고○○ 이사장>

○ (재밋섬 관련)특별회계로 113억이 남아있다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이사회 의결을 받게 됩니다. 현재 프로세스상 내부 타당성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매입할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양○○ 이사>

○ 매입결정은 다시 이사회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홍○○ 이사>

○ 나중에 하는 거죠?

<고○○ 이사장>

○ 네. 지금은 예치된 상태입니다.

<강○○ 이사>

○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내년 계획이 이렇게 충분히 추후 검토하겠다는 거니까 원안가결 하는 게 어떠십니까.

<고○○ 이사장>

○ 강○○ 이사님께서 원안가결 제안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양○○ 이사 등 다수 이사>

○ 재청합니다.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8호 「2020년 제주문화예술재단 기본재산운용계획(안)」은 강○○ 이사님께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9호 「2020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안전기본계획(안)」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9호 「2020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안전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 경영기획본부장이 안건을 설명하겠습니다.

<김○○ 경영기획본부장>

○ 의안번호 제9호 「2020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안전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립니다.

- 회의자료 의거 설명 -

<고○○ 이사장>

○ 본 안건에 대해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 이사>

○ 원안가결 원합니다.

<고○○ 이사장>

○ 홍○○ 이사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전체 이사>

○ 네.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9호 「2020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안전기본계획(안)」은 홍○○ 이사님께서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안번호 제10호 「2020년 일반감사 시행에 따른 결산부문 감사대행 실시계획(안)」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10호 「2020년 일반감사 시행에 따른 결산부문 감사대행 실시계획(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 경영기획본부장이 안건을 설명하겠습니다.

<김○○ 경영기획본부장>

○ 의안번호 제10호 「2020년 일반감사 시행에 따른 결산부문 감사대행 실시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의거 설명 -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10호 「2020년 일반감사 시행에 따른 결산부문 감사대행 실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감사>

○ 감사 실시계획안을 보면 공인회계사에게 감사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건으로 올라온 건 회계법인에게 맡기겠다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으로 확정된 건 지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도 맡기는 건지요? 그렇지 않다고 공인회계사에 맡긴다고 하면 감사반이란 게 있거든요 그 범위까지 포함시켜서, 감사대행을 외부회계 법인으로만 나와 버려서 그걸 확실하게 표시해주길 바랍니다.

<김○○ 경영기획본부장>

- 감사규정에서는 공인회계사에게도 감사를 의뢰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외부 회계법인에게만 맡겼습니다.

<한○○ 감사>

- 이번에도 회계법인에게 맡길 겁니까? 회계법인으로 찍어버리고, 공인회계사로 나오니까 범위를 좁혀버린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김○○ 경영기획본부장>

- 그럼 감사대행 문구를 외부 회계법인 및 감사반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 이사장>

- 규정을 바꾸는 건 아니고 계획안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외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으로 수정을 해서 계획안을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수정된 부분에 대해 의견 주십시오. 수정하는 걸로 의결하시죠.

<김○○ 등 다수 이사>

- 네.

<고○○ 이사장>

- 김○○ 이사님 등 다수의 이사님께서 수정한대로 의견해주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홍○○ 이사>

- 네.

<고○○ 이사장>

- 의안번호 제10호 「2020년 일반감사 시행에 따른 결산부문 감사대행 실시계획(안)」은 김○○ 이사님등 다수 이사님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고○○ 이사장>

- 의안번호 10호와 연계하여 일반감사 실시계획서를 보고드립니다.
- 경영기획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경영기획본부장>

- 일반감사 실시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의거 설명 -

<고○○ 이사장>

- 의견 개선해주십시오.

<다수이사>

- 의견없습니다.

<고○○ 이사장>

- 의견 없으시면 경영기획본부장으로부터 회의록 서명 지정,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 경영기획본부장>

-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이사>

- 윤○○ 이사, 하○○ 이사님을 추천합니다.

<고○○ 이사장>

-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이사>

- 네.

<고○○ 이사장>

- 전체 이사님들이 동의하셨기에 본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폐회를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 폐 회

제5차 (정기)이사회 참석자 명단

번호	구분	성명	비고
1	이사장	고경대	
2	이사	강정호	
3	"	김가영	
4	"	부재호	
5	"	송윤규	
6	"	홍진숙	
7	"	양건	
8	"	윤선숙	
9	"	하진의	
10	"	홍정호	
11	감사	한정훈	

제5차 (정기)이사회 심의·의결 결과

구분	안건	결과
제1호	2019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제2호	2020년도 사업계획(안)	원안가결
제3호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제4호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가결
제5호	취업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가결
제6호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가결
제7호	지원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가결
제8호	2020년 제주문화예술재단 기본재산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제9호	2020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안전기본계획(안)	원안가결
제10호	2020년 일반감사 시행에 따른 결산부문 감사대행 실시계획(안)	수정가결